

제 806 호  
1980.10.30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
편집: 문화공보관 박 종 우

전화 75-7834

인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# 시 보

## 차 례

### ◎ 고 시

제 357 호 :	도시계획사업 (광장) 실시계획인가.....	3
제 358 호 :	도시계획시설 (학교, 도로) 결정및 변경, 지적승인.....	5
제 359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변경 고시.....	7
제 360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.....	7
제 361 호 :	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결정및지적승인.....	8
제 362 호 :	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변경허가.....	
제 363 호 :	도시계획미관지구지적승인.....	

### ◎ 공 고

제 321 호 :	공원시설 (정구장) 관리허가.....	
제 322 호 :	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.....	

<이면 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# 서울특별시

제 323 호 :	자동차운송사업제면허취소공고.....	10
제 324 호 :	도시계획사업(여객자동차정류장부지공사)완료공고.....	11
제 343 호 (강남구공고) :	공인개각사용꼭고.....	11
제 51 호 (강동구공고) :	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.....	12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57 호

도시계획사업(광장) 실시계획인가

1. 건설부고시 제 223 호(77.9.1)로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318 호(77.11.9)로 지적 고시된 천호사거리 가차 정비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(79.12.10)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2과, 강동구청 도시정비과, 건설관리과, 토목과 및 시민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10.28

서울특별시 장

가. 사업시행지: 강동구 천호동 67-5앞  
광장일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류: 도시계획사업(광장)
- 2) 명칭: 천호사거리 가차 정비공사

다. 사업의 규모

- 1) 아스팔트 포장  
A = 193.1 a
- 2) 보도블럭 포장  
A = 49.3 a
- 3) 하수도 시설  
D = 800 mm      L = 710 m

라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: 80.8.20-80.12.30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토지수용법 제 4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 설명: 다음(토지조서)

사. 공사설계도서: 생략

아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: 생략

토 지 조 서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㎡)		소유자		관계인	
			공부	면적	주소	성명	주소	성명
성내동	62-1	도로	674	674	서울시			
"	62-3	"	60	60	"			
"	59-15	"	33	33	"			
"	59-33	"	909	909	"			
"	67-2	"	248	248	"			

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	소 유 자		관 계 인	
			공부	편입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
성내동	66-4	대	701	701	도봉미아 317-7 도봉미아 319-41	엄덕기 김정출	동대문동-은동 가동기 277-83 도봉수유 472-303 (강릉구청압류)	김치경 이종열
	67-4	대	326	326	관악봉천 444-25	유석환		
	67-6	도로	174	174	서울시			
	68-1	"	167	167	"			
	67-3	"	512	512	"			
	67-4	대	36	36	도봉미아 317-7	엄덕기		
	68-3	도로	253	253	서울시			
	69-3	"	227	227	"			
	72-7	건	86	86	중곡동 258-13 성수동2가 250-31	신길용 최일만	동부세무서 강릉구청	
	73-5	대	174	174	도봉미아 319-41	김정출	용산구서계 가동기 동 245-16	김종화
	65-3	"	63	63	도봉미아 317-7	엄덕기		
	75-4	도로	3125	3125	서울시			
	65-2	"	10541	10541	"			
76-2	대	261	261	관악방배 22삼호 APT 14동402호	박옥순	강남구신사 가동기 동 476-2	배재규	
77-57	"	44	44	명일동 324-18 풍납동 229-16	이근용 이두열			
64-7	"	691	691	동대문회경 148-32 동대문동-은동 277-83	홍중수 김치경			
천호동	66-5	"	21	21	영등포여의도 1-893 한양 APTH동 406	이기동		
	430-33	"	452	452	성동송정 73-610	조정순		
	428-2	도로	1455	1455	서울시			
	430-26	"	100	100	"			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(㎡)		소유자		관계인	
			공시	면적	주소	성명	주소	성명
종남동	70-18	도로	1110	1110	서울시			
"	70-25	"	1	1	"			
"	71-2	"	2337	2337	"			
성내동	72-1	"	838	838	"			
"	70-3	건	1	1	동대문달십리394-6	이근용		
"	70-2	도로	463	463	서울시			
"	69-2	"	163	163	"			
"	68-2	"	519	519	"			
"	60-12	도	2	2	"			80.10.5 지적불확정
"	60-13	대	4	4	강동구암사동서영 APT 17동308	김두연 외 2인		
"	60-14	"	12	12	서울시			
"	67-7	"	30	30	성동구구의동239	조승구 외 9인		
전호동	430-35	"	5	5	성동구양정 73-610	조정순		
"	430-36	"	102	102	"			
"	430-37	"	29	29	"			
총계				26275				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358 호

이를 고시한다.

· 도시계획시설(학교, 도로)  
결정 및 변경, 지적승인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서면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. 당사 관내 도시계획시설(학교, 도로)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,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동법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(79.12.10)에 의거

1980.10.28
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시설(학교)조서							
구분	시설명	위치		면적	비고		
신설	노원국민학교	도봉구 상계동 1015 외 1 일대		11,643㎡ (2,522명)			
추가	화계국민학교	도봉구 미아동 127-5 일대		13,591.1㎡ (4,111명)			
신설	신내국민학교	몽대문구 망우동 214 일대		11,327㎡ (3,426명)			
"	천왕국민학교	구로구 오류동 190-2 일대		15,229㎡ (4,607명)			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조서							
구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신설	소로	2류	8m	120m	상계동 1016-1 일대	상계동 997 외 6 일대	
"	"	"	"	140m	상계동 997 외 5 "	상계동 996 일대	
기정 변경	"	1류	10m	150m	상계동 1015-2 "	"	폐지
기정 변경	"	"	"	160m	상계동 1015-1 일대	상계동 997-6 일대	폐지
신설	"	3류	6m	92m	망우동 213-7 일대	망우동 214 일대	
기정 변경	"	2류	8m	290m 336m	중 2-175 일대	중 1-112 일대	일부구간 노선변경
기정 변경	"	"	"	221m 197m	오류동 183 일대 " 183 "	오류동 187-17 일대	일부구간 노선폐지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						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59 호

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변경고시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83 호 ( 80. 3.11 ) 호로 사업 시행허가한 도봉구 수유동 491-61의 4필지의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 79.12.10 )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낸다.

1980.10.29

서울특별시강

- (1) 사업시행지 : 도봉구 수유 491-61의 4필지
- (2)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(학교)
- (3) 사업의 명칭 : 수유중학교
- (4) 사업규모 및 면적 : 34,176 ㎡ 중17,950 ㎡
- (5)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: 북부교육구청장
- (6) 사업의 준공일  
당초준공예정일 : 1980.9.15  
변경 : 1981.9.15
- (7)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

관리명세 ( 별첨 ) 생략

- (8)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, 성명: ( 별첨 ) 생략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60 호

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

- 1. 건설부 고시 제 318 호 ( 73.8.1 ) 로 도시계획시설 ( 대학교 )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 137 호 ( 73.8.15 ) 로 지적 승인권 성동구 건국대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건국대학원으로 부터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를 설립코져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 79.12.10 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80.10.29

서울특별시강

- 1. 사업의 시행지 : 성동구 자양동 220 - 124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

<p><b>사업 ( 학교 )</b>                  전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                3. 사업 시행면적 : 10,489.1 평                  4. 사업 시행자 주소 설명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93-1                  학교법인 전국대학원 이사장 유승운                  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                가. 사업의 착수 년월일 : 시행허가 일로부터 1주일 이내                  나. 준공 예정일 :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                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 ( 생략 )</p>	<p>도 시흥군 소하읍 광명리 일대 도시계획 시설 ( 학교 ) 변경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동법 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호 ( '79.12.10 )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                 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과와 경기도 시흥군 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
--	--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61 호

1980.10.30

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및지적승인

1. 당시 도시계획 구역 관내 경기

서울특별시 장

도시계획 시설 ( 학교 ) 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	적	면	적	비	고
기정	광명공일전수 학교	경기도	시흥군 소하읍 광명리 산 58 의 2 일대	4,488	평		
변경	"	"	"	4,490	평	2	평증가 (토지교환)

\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 도면생략 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62 호

도시계획사업 ( 주차장 ) 시행변경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4 호 ( 78.7.5 ) 및 동고시 제 348 호 ( 79.7.28 )

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되고 동고시 제 492 호 ( '80.11.26 ) 로 시행자 명희변경 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기간 연기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을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조와



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3 호 ( 79.12.10 )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  
 2. 판제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 
 서울특별시  
 1980년 10월 31일

가. 사업시행지 : 강남구 양재동 536-2번지의 20필지  
 나. 사업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허가  
 다.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: 전남 광주시 동구 대신동 7-1 (주)광주고속사장 박정구  
 라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
 착 공 : 79년 11월 20일  
 준 공 예 정 일 : 80년 10월 30일  
 변경준공예정일 : 81년 4월 30일  
 마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

리명세서 (생략)  
 바.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(생략)  
 ◎ 서울특별시 고시제 363 호  
 도시계획미관지구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381 호 (79.8.30) 및 동고시 제 13 호 (80.1.24) 로 도시계획 미관지구 결정권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  
 2. 판제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 
 1980년 10월 31일  
 서울특별시

○ 미관지구 지적승인 소서

구분	지구명	종별	연장	폭	면적	기 점	중 점
신설	미관지구	3종	600	양 측 200 m	24,000 ㎡	금호대교남측	압구정동
기정	"	4종	2,450	" 12 m	58,800 ㎡	반포동산 46-1	서초동 788 부리
변경	"	3종	2,450	" 20 m	98,000 ㎡	"	"

\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생략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21 호

공원시설(정구장) 관리허가

도시공원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시설 관리허기 하였기 동법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. 공원의 명칭 : 동작주차공원
2. 허가면적 : 5,844㎡ (1,768 평)
3. 허가기간 : 1980.8.1 - 1982.9.30
4. 수허가자  
주소 : 서울시강서구동촌동 411-134

- 설명 : 창 태 진
5. 허가목적 : 정구장 운영
  6. 시설물 설치내용  
정 구 장 : 10면  
백 보 드 : 1개소  
관리사무실 : 1동 44.7평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22 호

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

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제 4 조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물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80.10. .  
서울특별시장

- 다 음 -

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허가번호	제조구분	취소사유
남일전공사	김상명	독산동 155-5	1-8-49	전동력용용 기계기구류	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7 조위반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23 호







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공고

서울특별시 택시 자동차운송 사업  
체인 다음 업체는 자동차운수 사업

법 제 26 조 및 제 31 조 제 1.4 항의 규정에 의거 택시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 처분 하였고 공고함.

1980.10.30  
서울특별시장 박영수

1. 면허 취소 업체			
업 체 명	대 표 자	면허대수	주 사 무 소
수도학시주식회사	김 상 재	35 대	성동구 성수동 2가 251-1
2. 면허 취소일 : 1980. 10. 30.			
3. 면허 취소 사유 : 사업 경영 불실, 면허 조건 위반			
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324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부지공사) 완료공고</p> <p>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87 호 (80.8.9) 로 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 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공사완료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항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>1980.10.29. 서울특별시 장</p> <p>1. 사업의 시행지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30-7, 231-11</p> <p>2. 사업의 종류 및 경칭 : 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 정류장, 부지공사)</p> <p>3.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: 성동구 성수동 2가 234-1 한서교동주</p>		<p>식회사 대표이사 조덕현</p> <p>4. 사업기간 : 1980. 8.19 - 1980. 9.31</p> <p>5. 사업규모 : 2,744 명방미터</p> <p>6. 허가번호 및 일시 : 서울특별시 고시 제 287 호 ( 80.8.9 )</p> <p>7. 준공도면 : 별첨 ( 생략 )</p> <p>◎ 강남구 공고제 343 호</p> <p>공인개각사용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제 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장적인 및 제인을 개각사용 승인하였기 동 조례 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</p> <p>1980.10.2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</p> <p>1. 개각공인 사용 개시일 : 80.10.28. 09:00</p> <p>2. 공인개각동 : 청담동 장직인 및 제인</p> <p>3. 동인인명</p>	

인 영	제 각 인 영 (신)  	제 각 인 영 (구)  
공인명	철담동장직인 및 개인	철담동장직인 및 개인
<p>◎ 강동구청공고제 51 호</p> <p>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제 6조 2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천호 1 동 장 공인을 사용 승인하였기 편인규 정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</p>		<p>1980.</p> <p>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인개각 사용 개시일자 1980.11.1 부터</li> <li>2. 개각된 공인명 ○ 천호 1 동장의 직인 및 개인</li> <li>3. 공인개각 인영</li> </ol>
인 영		
공인명	천호 1 동 장 직 인 및 개인	